

# 선거관리위원 신청서

본인은 (사)한국잡지협회 제44대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.

성명	생년월일	성별	소속	직위	연락처 (휴대폰)	이메일

## [관련규정]

**제10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 구성은 선거 직전년도 12월 15일까지 자격회원 7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한다.

② 이사회는 위원 신청자 중 7인의 이름을 기술하여 선출한다. 단, 신청자가 7인에 미달할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한다.

③ 동수의 표를 얻었을 경우 회원가입,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.

④ 자격회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⑤ 위원은 5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선거인명부의 작성, 후보자등록, 선거운동관리, 투표 및 개표관리,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

2.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

3.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, 위반자에 대한 경고,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,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, 기타 심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⑦ 선거관리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)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(회의 개의는 회장이 하고 위원장 선출과 동시 의장직을 넘겨준다.)

⑧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⑨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즉시 위원 명단을 공고(별지 1호 서식)하여야 한다.

⑩ 위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회 10일전까지 사무처에 신청한다.

⑪ 협회는 선거 직전년도 11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 공모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

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

(인)

(사)한국잡지협회 귀중